

배출시설인가요?



당사는 조립제품제조업을 하는 기존에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질의 1) 제품생산 공정은 [원자재 → 가공 → 열처리 → 유탕 → 탈지 → 수세 → 착색 → 수세 → 연마 → 조립 → 검사 및 포장, 출고] 입니다.

공정 중 열처리는 금속과 금속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제품의 표면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표면부를 금속 가열, 은납을 용융시켜 두개의 물체를 접합하는 공정입니다.

기존의 열처리(은납땜) 1.7㎡ × 1기는 허가를 득한 시설이며, 금회 똑같은 용량으로 3기의 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유탕시설은 열처리 작업이 완료된 원료를 금속 냉각(담금질)을 하므로 강재에 필요한 성질(경도, 강도)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금회 1.16㎡ × 1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두시설(은납땜시설, 유탕시설)이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질의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중 연삭기 5마력 2대이상일 경우 소음진동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엔 습식연마 및 바렐연마시설일 경우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1) 열처리공정 설명 및 허가받은 열처리시설 규모로 볼 때 열처리시설(1.7㎡×1)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중 마. 가열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허가받은 열처리시설(1.7㎡×1)과 동일한 열처리시설(3기)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열처리 후 원료를 금속 냉각하는 담금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은 건식 및 습식에 관계없이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바렐연마기는 허가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성형기)



당사는 기허가시설인 방지시설(흡착탑)에 성형시설(119Hp, 58Hp, 58Hp, 48Hp = 합계283Hp)이 연결되어 가동 되고 있으며, 금번 성형기 20Hp× 2대를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 1) 금번 증설되는 성형기(20Hp×2대)에 신설 흡착탑을 설치하여 가동 할 경우 허가(신고)대상인지요?

질의 2) 기허가 방지시설(흡착탑 400cmm)에 증설 성형기(20Hp×2대)를 연결할 경우(20% 풍량 여유) 허가(신고) 대상인지요?

질의 3) 성형기는 합계 250Hp 이상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방지시설 에 연결된 총합계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에 설치된 성형기 용량의 총합계 인지가 궁금합니다.



질의 1) 대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증설하고자 하는 성형시설(20마력 2기)에 새로운 배출구(흡착탑)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합계 250마력 이하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이상 증설하는 경우(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30%)에는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기존의 방지시설에 성형시설(20마력 2기)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비고 1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성형시설이 동일사

업장내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성형시설의 합계 용량이 250마력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을 말합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당사는 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도장시설(75㎡×5기)과 건조시설(40㎡×1기, 125㎡×1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아이템이 추가되어 별도로 용량 미만 도장시설(내용적 1.5㎡, 동력 콤프레샤 2HP)과 건조로(내용적 2.4㎡, 연료사용량 시간당 9kg)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료는 에폭시 레진이구요. 전기 절연재료(피복)입니다. 하지만 "대기배출시설 규정 비고1의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 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라는 문구가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 하나 만약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환경 방지를 위하여 도장시설 후단에 필터 포집장치(방지시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신고를 득한 도장시설(75㎡×5기)과 건조시설(40㎡×1기, 125㎡×1기)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장시설(내용적 1.5㎡, 동력 콤프레샤 2Hp)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용적 5㎡ 이상(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용적 2.4㎡(시간당 연료사용량 9kg)의 건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14. 공통시설중 자목의 규정에 의한 용적 2㎡ 이상의 기타로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장시설 등에

배출시설 허용기준치 초과유예적용 시간기준?



배출시설 허용기준치 초과유예시간 적용 시간기준에 대하여 궁금하기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화력발전기 방카-C 사용중 정지시 파이프에 남아있는 방카-C 가 아스팔트콜타르와 같이 굳게 되어 파이프를 교체해야하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발전기 가동 전 1~2시간동안 방카-A등으로 충분히 교체후 정지하는 실정입니다.

내연발전기 특성상 버너점화 즉시 발전기가 가동되며(배출 가스 배출) 연료투입정지시(1분이내) 발전기운전 정지(배출가스 배출정지) 되고 있습니다.

별표8. 배출시설 허용기준치 초과유예 시간적용
- 재가동(버너점화)..... 2시간
가동정지(연료투입정지)... 2시간

예) 내연발전기를 08:00 ~ 22:00 운전의 경우 유예시간은 아래와 같은지?

- 1) 재가동 08:00 ~ 10:00
- 2) 가동정지 20:00 ~ 22: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4.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붙인 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8시간(복합 화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가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재가동의 경우와 배출시설을 8시간(복합 화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가동을 중단하는 가동중지의 경우 등에 한하여 초과인정시간 특례를 적

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중 내연발전시설의 경우, 재가동시에는 버너점화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가동중 지시에는 연료투입증지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을 초과인정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너점화 시점이 08시라면 10시까지, 연료투입증지 시점이 22시라면 24시까지 초과인정시간으로 적용 됩니다.

폐수배출시설허가여부



당사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업체입니다.

크롬 및 니켈도금 등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종이라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규모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거 500제곱미터 이상은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가 나오지 않고 500제곱미터 미만은 설치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신청하면 모든 업종이 허가가 난다는 말로 들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기존에 신고필증상에 특정폐수가 나오지 않는 일반폐수로 신고를 하여 영업중 특정유해 물질이 나오는 크롬도금 등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제한여부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17(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여부에 따라 다름) 처분을 받고 병행하여 사법 처리됩니다.

TMS 설치대상 여부(탈사시설)



당사는 탈사시설이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1기는 수동이고 1기는 자동으로 탈사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동이 메인 탈사시설이고 자동은 일량이 많을 경우 보조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탈사시설이 TMS 설치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보면 연속식일 경우 TMS를 설치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연속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수동탈사 시설은 쇼트실이 설치되어있어 지게차로 부재를 운반한후 문을 닫고 사람이 직접 탈사작업을 한 후 작업이 끝나면 다시 문을 열고 지게차로 빼내는 형식으로 작업이 되며 지게차로 부재를 옮기는 시간에도 집진기는 계속 가동하여 하루에 7~8시간 정도 방지사설을 가동 하고 있습니다.(실제 탈사 작업시간은 4~6 시간임)

또한 자동 탈사시설은 콘베이어가 설치되어있어 지게차로 콘베이어에 부재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탈사가 되어 나오고 지게차로 부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동 탈사시설은 보조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을 경우만 운영을 하고 있어 월별로 가동시간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TMS 설치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 오염물질은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자가 측정 횟수를 늘리면 (현재는 2달에 한번) TMS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리로 그렇게 하려면 언제부터 측정 횟수를 늘리면 되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연속식 탈사시설이라 함은 설비구조가 탈사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일 8시간이상 연속하여 가동되는 시설을 말하며, 가동시간이란 실

제 작업시간이 아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필증에 기재된 조업시간을 의미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규정에 의거 연속식 탈사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일 경우 부착대상이 됩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여부는 자가측정횟수와 상관없이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면제가 됩니다.

가. 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은 경우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 한하여 부착을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인 경우

마. 연간 가동 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바.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인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중 액비저장조에 설치되는 교반기



축산폐수처리시설중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교반장치가 없는 경우는 제1단계 저장조(6개월) 및 제2단계 저장조(1개월)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반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

단계 저장조(6개월)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반장치는 임펠러가 부착되어 회전에 의한 교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브로워를 이용한 공기주입으로 섞어주는 방식의 교반은 교반장치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1999. 8. 정부합동)에 따르면 액비저장조는 액비의 균질화를 위해 고정식 교반기를 반드시 설치(사각 배플설치식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고정식 교반기로는 propeller교반기, 플로트식 표면교반장치, 수중교반기, 펌프순환식 교반장치, 폭기식 교반장치 등 교반목적에 부합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질의 1) 오일탱크 해체 후 TANK 바닥 철판 부식 방지용으로 사용한 오일샌드(모래에 Oil 섞은 것, Oil 함량 3,000 ppm)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 지?

질의 2) 사업장 일반 폐기물일 경우 상기 오일샌드를 매립 처리 가능한 지요?



오일샌드를 용출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